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요강



2025. 11.12

국제사이버대학교

차 례

I. 입학전형 기본사항 1

- ① 모집 일정 1
- ② 전형요소 및 배점 2
- ③ 전형료 및 등록금 2
- ④ 장학 안내 3
- ⑤ 지원 절차 5
- ⑥ 지원자 유의사항 6
- ⑦ 합격자 유의사항 6
- ⑧ 입학 관련 문의처 7

II. 신입학 8

- ① 신입학 모집단위 및 인원 8
- ② 신입학 일반·특별전형 지원자격 9
- ③ 신입학 제출서류 10
- ④ 신입학 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11
- ⑤ 신입학 외국학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안내 12

III. 편입학 13

- ① 편입학 모집단위 및 인원 13
- ② 편입학 일반·특별전형 지원자격 15
- ③ 편입학 제출서류 17
- ④ 편입학 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19
- ⑤ 편입학 외국학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안내 20

IV.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전형 유의사항 21

- ① 산업체위탁 전형 제출서류 유의사항 21
- ② 위탁교육 협약이 가능한 산업체의 범위 21
- ③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등 유의사항 22
- ④ 군위탁전형 유의사항 22
- ⑤ 위탁전형 제출서류 발급 방법 23

I

입학전형 기본사항

1 모집 일정

가. 정시모집

구 분	일 정	절차 및 방법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2025.12. 1.(월) ~ 2026. 1. 9.(금)	- 입학홈페이지(enter.gjcu.ac.kr) 온라인 접수 - 전형료 납부(가상계좌, 휴대폰, 카드 결제 등)
학업소양·적성 검사 응시		- 입학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시 (접수기간 중 응시 기회는 1회)
입학서류 제출		- 입학서류(학력, 장학 등) 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6. 1.15.(목)	-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조회 - 합격자 문자, 이메일 안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026. 1.15.(목) ~ 1.22.(목)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최소 12학점 ~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 상기 모집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정시모집으로 등록이 마감될 경우 2차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2차 모집

구 분	일 정	절차 및 방법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2026. 1.28.(수) ~ 2.19.(목)	- 입학홈페이지(enter.gjcu.ac.kr) 온라인 접수 - 전형료 납부(가상계좌, 휴대폰, 카드 결제 등)
학업소양·적성 검사 응시		- 입학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시 (접수기간 중 응시 기회는 1회)
입학서류 제출		- 입학서류(학력, 장학 등) 온라인,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26. 2.25.(수)	-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 조회 - 합격자 문자, 이메일 안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026. 2.25.(수) ~ 2.28.(토)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최소 12학점 ~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 상기 모집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정시모집으로 등록이 마감될 경우 2차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형요소 및 배점

구 분	전형요소 및 배점		가산점	합계
	학업소양검사	적성검사	학과 관련 자격증	
신·편입학	60	40	10	110

- 학업소양·적성검사 응시 기회는 접수기간 중 1회에 한하며, 90분 이내에 작성해야 함(완료 후 수정 불가)
- 전형 성적이 합계 총점 30점 미만인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업소양·적성검사 대리 응시자는 입학이 취소됨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학업소양검사 → 적성검사 → 가산점 순으로 결정함
 - ② 상기 방법으로 결정이 불가능할 시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가산점: 지원학과 관련 자격증 소지 시, 1개당 2점 최대 5개까지 반영(관련 자격증은 홈페이지 공지)
-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3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실입학비용 (입학 첫 학기)	수업료(학점당 73,000원)			학과(전공)
		12학점 기준	15학점 기준	18학점 기준	
20,000원	66,000원	876,000원	1,095,000원	1,314,000원	ESG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한국어교육전공
		876,000원 + 100,000원	1,095,000원 + 100,000원	1,314,000원 + 100,000원	뷰티비즈니스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 뷰티비즈니스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는 수업료와 함께 기본등록금 10만원이 부과됨. (기본등록금: 특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전공특강 등을 위한 수업료)
- 교육기회균등, 보훈대상자, 산업체위탁, 군위탁 특별전형 및 직전학기 예비합격자는 전형료 면제
- 무통장 입금(신한은행 100-024-337059), 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교내 장학 중복수혜) 신청 가능
- 교내 장학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시 국가장학금을 우선하여 감면하고, 청구 등록금이 발생 할 경우 교내 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실입학비용(66,000원)은 교육부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른 입학실비용 수업료이며, 입학 첫 학기만 납부함(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4 장학 안내

가. 일반장학

장학명	장학 대상	장학혜택	제출서류
직장인장학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업주부장학	전업주부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희망디딤돌 장학	무직자, 실직(폐업)자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주/세대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가족장학	2인 이상의 입학자가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장학	공무원연금 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군·경·소방 가족장학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글로벌장학	재외교민, 해외파견근무자 및 자녀, 외국인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해당 증명서
대의협력장학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기관, 단체 포함)소속으로서 추천을 받고 전형에 합격한 자	협약내용에 따름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소속 증명서
보훈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재학기간 수업료 100% 감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가족	8학기 수업료 100% 감면 *관계 법령 지급 규정에 따름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8학기 수업료 50% 감면 *관계 법령 지급 규정에 따름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및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재학기간 수업료 100% 감면 *관계 법령 지급 규정에 따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수능우수장학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 자. ※ 신입학에 한함	재학기간 수업료 전액 면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온기장학	1종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0구간(기초생활수급자) ~ 4구간 자격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구간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직전학기 평균 백분율 70점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성적 미달로 인해 국가지원이 중단될 경우, 직전 학기 국가장학 실 지원 금액 만큼 대학에서 지원함 -1학년 신입학생은 재학기간 중 2회, 편입학생은 1회로 한정함		학업지속희망계획서(본교양식)
	2종 장애인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3종 -국가장학금 8학기 수혜가 끝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학생: 직전학기까지 성적 평균 백분율 70점 이상 -입학생: 전적대학 성적 평균 백분율 70점 이상 [장학 신청 시점에 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해당 학기 수업료 50% 감면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자사랑장학	1종 사회봉사 경력, 직장 근무 업적, 예체능 특기 발휘,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 장학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장학신청서(본교양식)
	2종 수상 경력, 가계 곤란, 사회적 배려 등을 사유로 교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입학생 대상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특기장학	JPT 880점 ↑ / 일본어능력시험 1급 / TOSEL 550점 ↑ / TOEIC 880점 ↑ / TOEFL 600점(CBT 250, IBT 100) ↑ / TEPS 800점(1등급) ↑ / 新H.S.K 5급(기존 H.S.K 7급) ↑ ※ 입학생 대상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취득 및 성적증명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
창조인재장학	국가대표 선발, 국제 대회 입상, 전국 대회 우승, 탁월한 학문 업적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장학위원회 심의	본교 추천 양식에 의거 약간 명 선발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학부 수석	해당 학기 수업료 100% 감면	
	학과 수석	해당 학기 수업료 70% 감면	제출서류 없음
	학과 우등(학과별 석차 7%이내)	해당 학기 수업료 40% 감면	
광동가족 장학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
	학교법인 광동학원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입사 후 6개월 이상된 자 본인 또는 부계, 모계 2촌 이내 친인척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GJCU 재직자 장학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입사 후 6개월 이상된 자, 또는 직계가족	재학기간 수업료 100% 감면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입사 후 6개월 이상된 자의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학생임원장학	총학생회, 대의원회 임원	직위에 따라 감면	-

나. 특별전형 장학

구분	교육기회균등	다문화가정	다자녀부모	보훈대상자	창조인재	현역군인
정원내	온기장학1종 부여	수업료 30% 감면	수업료 30% 감면	관련 규정에 따름	수업료 30% 감면	수업료 50% 감면

구분	산업체위탁	군위탁	교육기회균등	농어촌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학사편입
정원외	위탁계약에 따름	위탁계약에 따름	온기장학1종 부여	수업료 50% 감면	관련 규정에 따름	수업료 30% 감면	수업료 50% 감면	수업료 30% 감면

※ 특별전형 장학은 특별전형 서류 제출이 장학 신청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장학 신청서가 없습니다.

다. 국가장학

장학명	지급 대상	장학 혜택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I 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입학 첫 학기 18학점 신청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 신청 후 확인

※ 신청 기간,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라. 장학관련 유의사항

- 뷰티비즈니스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와 기본등록금에는 교내 장학이 적용되지 않음
-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수혜 비율이 높은 1개의 장학만 적용됨. 단,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함
(국가장학금 우선 적용 후, 청구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교내 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모든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일부 장학 제외)
- 일반장학은 입학홈페이지(enter.gjcu.ac.kr) 나의입학현황 교내 장학신청 메뉴에서 장학 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 국가장학금은 해당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본교 입학홈페이지 관련 안내를 참고)

5 지원 절차

절 차	학생 지원 절차
입학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홈페이지 접속(enter.gjcu.ac.kr) ○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모집 일정과 전형 방법, 유의 사항 등 입학과 관련된 정보 확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형과 지원 학년 등에 유념하여 원서작성 ※ 작성한 내용은 제출 서류와 동일해야 함 ○ 원서 제출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며, 입학 안내메일이 발송됨 ○ 전형료 2만원 납부(최소의 경비로 책정된 전형료이며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준수 함) ○ 전형료 결제 방법 : 가상계좌, 휴대폰, 카드 결제 등
학업소양·적성검사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시 ○ 응시 기회는 1회에 한하며, 90분 이내에 작성해야함
입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형별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우편번호 16487)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참고 ○ 서류 도착 여부는 문자로 안내함 (등기번호 조회 및 입학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공지한 합격자 발표일 오후 3시에 발표 ○ 입학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격자별 문자 통보함)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추천과목]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함 ○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입금, 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 ○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게 [대학생활안내책자]가 발송 됨
학번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기간 종료 후 학번 발급 (문자로 발송되며, 온라인 강의실에서 조회 가능)
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강의실(cyber.gjcu.ac.kr)또는 모바일 스마트캠퍼스에서 강의 수강

6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시 모집요강을 필히 확인하여 기재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본교는 입학원서 기재상의 착오, 누락, 오기, 제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지원자의 실수로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입학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전형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함
-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용한 지원, 전형자료상의 주요 사항 누락, 허위기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은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술학교, 전수학교, 예술학교, 산업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여부를 반드시 출신학교 또는 관할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해야 함. 추후 언제든지 학력 미인정 학교로 확인되는 경우, 입학 후라 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입학 전형평가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입학 전형료의 반환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을 준수함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종 인정하고 발급하는 증명서로 제출하여야만 정식 학점(편입 지원 자격)으로 인정함
- 정원외 교육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지원자는 정원내 교육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전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교 지원 및 입학생은 타(他) 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단, 본교가 아닌 타 대학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 모집요강, 학칙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본교는 동영상, 음성, 텍스트 형태의 강의가 진행되며, 점자 및 수화 기능은 지원하지 않음.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원 전에 학업 가능 여부를 학교 측과 미리 상담 요함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 지원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본교 입학자료실에 안내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작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전형 성적이 대학수학능력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불합격될 수 있음

7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는 전형 일정의 합격자 발표일에 본교 입학홈페이지(enter.gjcu.ac.kr)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지원자는 자신의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입학원서 상에 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합격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에 의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에는 다음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 부여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의 출신 학부(과)와 다른 학부(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 후 전적 대학 취득 학점의 전공별 학점인정 심사에서 동일 학부(과) 출신자보다 전공 이수를 위한 필요 학점이 더 요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학 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본교 학사운영규정(제23조)에 따라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등록포기 시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등록)포기원을 본 대학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 하여야만 등록금이 환불 처리됨
- 등록금의 환불은 본교 학칙(제70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기타 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8 입학 관련 문의처

- 주소 : (우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인계동 950-12)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 홈페이지 : enter.gjcu.ac.kr ○ 학생처 : 1588-3151(1번) ○ 팩스 : 031)229-6230
- 교무처 전화번호 (대표번호 1588-3151로 통화 후 내선 번호 3자리 입력)

학부	학과	내선	학부	학과	내선
교무처	교무팀	211,212,238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219
	수업팀	213,215		시니어모델치유학과	
	학적팀	214,216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스마트 경영학부	ESG경영학과	217		아동가족상담학과	
	부동산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건강스포츠학과	218	K-컬처학부	K-e스포츠학과	220
	노인복지학과			K-뷰티아트학과	
	사회복지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ICT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217		한국어교육전공	
	안전보건공학과				

II

신입학

1 신입학 모집단위 및 인원

계열	학부	학과(전공)	정원내	정원외 특별전형						
			특별·일반	산업체 위탁	군위탁	교육기회 균등	농어촌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미래창조융합계열	스마트 경영학부	ESG경영학과	500	500	250	22	5	150	250	1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 복지학부	건강스포츠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ICT 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K-컬처학부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합 계			500	500	250	22	5	150	250	150

2 신입학 일반·특별 전형 지원자격

전형구분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 지원 불가 ※ 신입학 외국학교 출신 지원 자격은 12페이지를 참고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특별전형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다자녀 부모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보훈대상자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창조인재 ○ 2004년 이후 출생자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정원외	산업체위탁 ○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군위탁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기회균등 ○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지원자격과 동일
	농어촌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이종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3 신입학 제출서류 (별도 표기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전형구분	공통 제출서류
일반전형	<p>다음 중 해당 서류 제출</p> <p>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p> <p>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p> <p>③ 외국학교 출신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이에 대한 한글번역문(공증),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p> <p>④ 기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 신입학 외국학교 출신 제출 서류는 12페이지를 참고(12학년 미만 학제 이수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p>
가산점	○ 학과 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특별전형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지원자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 도착일 또는 우체국 소인 기준 7일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 확인용)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다자녀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가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창조인재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통제출서류로 확인함)
	현역군인	○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정원외	산업체위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증명서 일체(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중 택일하여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군위탁	○ 교육부 위탁 추천 공문 (지원자가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취학 추천 신청 후,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접수)
	교육기회균등	○ 정원내 교육기회균등 제출서류와 동일
	농어촌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각 1부 ※ 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각 1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
	외국인	<p>[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p> <p>○ 학생, 부모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각 1부</p> <p>○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1부</p> <p>[외국 전 교육과정 이수자]</p> <p>○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p> <p>○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p> <p>○ 신분확인서류</p> <p>-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p> <p>- 외국인: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p> <p>-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p>
특수교육대상자	○ 국가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4 신입학 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가.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외국학교 학력 서류의 경우 해당국 서류 발급 상황에 따라 발급 일자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함
-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개강 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나. 서류 발급방법

구 분	발급방법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민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이용 (본인인증 필요,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까운 시·도 교육청 민원신청 ○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이용 (본인인증 필요, 발급기준연도 확인 후 발급)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고등학교 학력 인정 :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신청 후 발급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일정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진행)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 미국 : 출신 학교가 위치한 지역 소재 주미 한국영사관 및 교육청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02-3702-0600)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02-2003-0102)) ※ 상기 기관에서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해당국의 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 해당국가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글번역공증본	○ 번역공증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글번역과 공증 의뢰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번역공증사무소'로 검색)

※ 입학서류 제출처

: (우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5 신입학 외국학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학력인정 기준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1개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경우(혼합이수)

최종 이수학제	인정 조건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해야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2학년제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나. 제출서류

학년제	제출서류
12학년제 이상 국가 이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②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2학년제 미만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①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②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③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0학년제 미만 국가와 혼합이수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② 대학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③ 대학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④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2년 미만 학제를 이수한 경우, 부족한 연한(2년 이상)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11학년제 미만 국가와 혼합이수-1	[초·중·고 교육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③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1학년제 미만 국가와 혼합이수-2	[초·중·고 교육과정 마지막 3년 한 국가에서 수료하지 않은 경우]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② 대학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③ 대학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④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2년 미만 학제를 이수한 경우, 부족한 연한(1년 이상)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1 편입학 모집단위 및 인원

가. 일반 편입학

학년	계열	학부	학과(전공)	정원내							
				특별·일반	산업체 위탁	군위탁	교육기회 균등	농어촌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2학년 편입학	미래 창조 융합 계열	스마트 경영 학부	ESG경영학과	82	100	100	4	1	50	36	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 복지 학부	건강스포츠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 학부	웰빙귀농조경학과								
			상담심리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ICT 공학부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소방방재안전학과								
		K- 컬처 학부	안전보건공학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합 계			82	100	100	4	1	50	36	50	
3학년 편입학	미래 창조 융합 계열	스마트 경영 학부	ESG경영학과	88	100	-	11	3	-	-	-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 학부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ICT 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학과								
		미래융합 학부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영상문화 학부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합 계			88	100	-	11	3	-	-	-	

나. 3학년 별도편입학

계열	학부	학과(전공)	정원내	정원외 특별전형							
			특별·일반	산업체 위탁	군위탁	교육기회 균등	농어촌	북한이탈 주민	외국인	특수교육 대상자	학사 편입
미래 창조 융합 계열	스마트경영 학부	ESG경영학과	400	400	200	18	4	120	200	120	18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 학부	건강스포츠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ICT 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K-컬처 학부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합 계										

2 편입학 일반·특별전형 지원자격

가. 정원내 일반·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자격
2학년 편입학	<p>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p> <p>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 불가)</p> <p>② 국내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⑤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p> <p>⑥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p> <p>⑦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 편입학 외국학교 출신 지원 자격은 20페이지를 참고</p>
3학년 편입학	<p>다음 중 1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자</p> <p>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미졸업자 및 2년 미만 학제 전문대학 졸업자 지원 불가)</p> <p>② 국내 4년제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⑤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p> <p>⑥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p> <p>⑦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 편입학 외국학교 출신 지원 자격은 20페이지를 참고</p>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특별전형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교육기회 균등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p>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 가능자)</p> <p>○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p> <p>※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p>
다문화가정	○ 다문화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인 자
다자녀부모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
보훈대상자	○ 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또는 제대군인지원법령에 의한 제대군인 본인
창조인재	○ 2004년 이후 출생자
현역군인	○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나. 정원외 특별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특별전형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산업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와 산업체위탁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국가직 행정부 공무원) ○ 국회 소속 공무원(입법부 공무원) 또는 각급 법원 및 등기소 소속 공무원(사법부 공무원)
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기회 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북한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증빙이 가능한 자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특수교육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이종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사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점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정원내 일반전형 3학년 편입학으로도 지원 가능

3 편입학 제출서류 (별도 표기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가. 정원내 일반·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공통제출서류
2학년 편입학	<p>다음 중 해당서류 제출</p> <p>①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또는 수료(제적, 재학, 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③ 학점은행제의 경우 35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료(제적, 재학, 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⑤ 외국학교 출신의 경우,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p> <p>※ 편입학 외국학교 출신 제출 서류는 20페이지를 참고</p>
3학년 편입학	<p>다음 중 해당서류 제출</p> <p>① 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②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또는 수료(제적, 재학, 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③ 학점은행제의 경우, 70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④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료(제적, 재학, 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p> <p>⑤ 외국학교 출신의 경우,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에 대한 한글번역 공증본,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각 1부</p> <p>※ 편입학 외국학교 출신 제출 서류는 20페이지를 참고</p>
기타	[기타 가산점 - 해당자만 제출] - 학과 관련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특별전형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
교육기회 균등	<p>○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기타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 지원자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p> <p>※ 서류 도착일 또는 우체국 소인 기준 7일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p>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 확인용)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다자녀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훈대상자	<p>○ 보훈대상자: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가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p> <p>○ 제대군인 본인: 제대군인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p>
창조인재	○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공통제출서류로 확인함)
현역군인	○ 복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정원외 특별전형

특별전형	특별전형 추가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증명서 일체(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재직증명서로 제출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중 택일하여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위탁 추천 공문 (지원자가 국방부 또는 자대 인사과에 취학 추천 신청 후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접수)
교육기회 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기타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자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 도착일 또는 우체국 소인 기준 7일 이내 발급서류만 가능
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각 1부 ※ 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북한이탈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통보공문(편입학) 각 1부 ※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
외국인	<p>[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부모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각 1부 ○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1부 <p>[외국 전 교육과정 이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신분확인서류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1 외국인 - 시민권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귀화자 -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특수교육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학사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자의 경우 학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편입학 서류 제출 유의사항 및 발급방법

가.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외국학교 학력 서류의 경우 해당국 서류 발급 상황에 따라 발급 일자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학전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함
-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기 상이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개강 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추후 학력 및 지원자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시 본교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나. 서류 발급방법

구 분	발급 방법
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대학 방문 발급 ○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 발급 ○ 전적대학 홈페이지 인터넷발급서비스 이용 ○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서비스' 이용
학점은행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서비스' 이용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공문	○ 전문대학 이상 학력 인정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민원 발송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4)
아포스티유확인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학력인정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출신 학교가 위치한 지역 소재 주미 한국영사관 및 교육청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02-554-2688)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02-3702-0600)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02-2003-0187) <p>※ 상기 기관에서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학교가 위치한 해당국의 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 해당 국가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p>
한글번역공증본	○ 번역공증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글번역과 공증 의뢰(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번역공증사무소'로 검색)

※ 입학서류 제출처

： (우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0,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생처

5 편입학 외국학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학력인정 기준

구 분	학력인정 기준
2학년 편입학	①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②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 편입학	①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②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각 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 대학은 정규 학위 과정만 인정함 (기술교육과정, 비학위 과정은 미인정)
- 일본 단기대학 및 종합대학의 경우 편입학 지원 가능 이외 전문학교(전문사, 고도전문사 과정) 출신자는 편입학 자격 미인정
- 베트남의 경우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 호주 Advanced Diploma, Associate's Degree 이상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

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대학 제적·수료	① 대학교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② 대학교 제적,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④ 학적조회동의서 1부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학상담실 > 입학자료실 > 외국학교 출신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양식 사용) ※ 대학수료증명서에는 졸업소요학점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각각 번역 후 공증) ※ 대학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 졸업소요학점이 기재 되어 있는 성적증명서와 ㉡ 졸업소요학점이 기록된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 (㉠,㉡를 각각 번역 후 공증) (전적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졸업 요건 등을 캡처 또는 출력(발체)하여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원본 서류에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대학 졸업	① 대학교 성적증명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졸업장 대체 가능)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③ 학력인정확인서(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한글번역문(공증) 각 1부 ④ 학적조회동의서 1부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학상담실 > 입학자료실 > 외국학교 출신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양식 사용)

IV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전형 유의사항

※ 정원의 산업체위탁전형 지원자는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학사관리 등에 유의해야 함.

① 산업체위탁 전형 제출서류 유의사항

○ 법령에서 규정한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자 등은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대 사회보험별 적용 제외 대상> 예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에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무관 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센터로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② 위탁교육 협약이 가능한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 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임

③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등 유의사항

가. 입학시점 재직여부 재확인

-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은 모집 당시 본교와 위탁협약이 체결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해당 모집 학기 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최종 재확인함(추후 안내)
- 입학 전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 전 이직한 경우, 해당 산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함

나. 학사관리 및 재직확인

- 재학기간 중 해당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재입학 당시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 불가
- **재직여부 확인: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함**
-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가능, 이 밖에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직 확인 과정에서 본교와 위탁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적처리함
-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서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이직 기간은 4대 보험 등 공적 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산업체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이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산업체 위탁생은 퇴직 및 이직 시, 대학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산업체 위탁생은 반드시 산업체위탁 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산업체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

④ 군위탁전형 유의사항

- 재학기간 중 군에 계속 복무중이어야 함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라 운영
- 재입학 당시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 불가
- 재직여부 확인: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복무 여부를 확인하며, 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전역한 경우 제적 처리함
- 단, 군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전역한 경우, 출산 등으로 군에서 더 이상 복무 할 수 없

IV.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전형 유의사항

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 가능(이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군 위탁생은 전역한 경우, 대학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군 위탁생은 반드시 군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야 위탁생 학사관리와 장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재학 중 군 위탁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능함

5 위탁전형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구 분	발급안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사업장 로그인 아닌 개인 로그인 선택)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확인 → “전체 사업장” 상태로 신청(근무 중인 사업장을 선택하지 마세요) → “증명서 상세내역”에서 새로고침 버튼 클릭 후 출력 → 좌측 상단에 “웹팩스” 아이콘 클릭 → 증명서 접수 팩스번호(0507-514-6320 또는 031-229-6230) 입력 → 발급 완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 개인정보제공 동의 → “국문증명서” 선택 → “팩스 전송” 선택 → 증명서 접수 팩스번호(0507-514-6320 또는 031-229-6230) 입력 → 발급 완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자격득실확인서” 검색 및 선택 → “조회조건”에서 “가입자 전체” 선택 후 조회 → “팩스 전송” 선택 → 증명서 접수 팩스 번호 (0507-514-6320 또는 031-229-6230) 입력 → 발급 완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서 출력 후 학교로 우편 발송(팩스제출 불가)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산재), 조회구분(상용) 선택 후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증명서 출력 후 학교로 우편 발송(팩스제출 불가)
4대보험 미가입 (영세)개인사업자 위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1부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일하여 1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 공무원 위탁생은 상기 서류 대신 공무원 재직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필수, 팩스 제출 불가)
- ※ 팩스민원을 본인이 수신하거나, 직접 출력한 서류를 본교로 팩스 전송하는 경우, 접수된 서류는 사본으로 간주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팩스민원 신청을 통한 발급은 반드시 본교로 직접 전송되도록 해야 합니다.